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4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, 행정절차법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0형	99.02.07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(중단)	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미방문 1차 출석통지:21.04.13 2차 출석통지:21.04.20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(중단) ○ 처분일로 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 6. 4 ~ 2021. 6. 17.(14일간)
5.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조난영(Tel. 031-231-792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